# [2018-1학기 수강신청내역서 제출안내]

2018학년도 1학기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서를 일괄 출력하여 배부하오니 <u>반드시 본인의 수강신청</u> <u>내역을 확인</u>한 후 소속 학부장 확인(철회 교과목이 있을시)후 <u>2018. 3.22(목) 17:00까지</u> 교무지원팀(1층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▶ 제출절차

본인의 수강신청 확인

담당교수 및 소속 학부장 확인 (<u>철회 교과목이 있을시</u>)



교무지원팀(1층) 제출

- -. 수강신청에 이상이 있을시 교무지원팀(1층)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-. 수강신청 내역서 일괄 배부: <u>2018. 3.19(월)[교무지원팀(1층)[학과/학년별 과대표 수령]</u>

## ▶ 수강신청 철회

수강신청 내역서에 철회할 과목을 기재 후 **담당교수 및 소속 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후**(SDU 교과목 예외) **개강 후 3주이내[2018. 3.22(목) 17:00까지** 교무지원팀(1층)에 제출함.

# ▶ 유 의

수강신청 철회후의 수강학점이 <u>15학점 이상</u>이 되어야하며, 수강신청 내역서 제출후에는 일체의 변경이불가능함.

## [학사내규 제42조(신청학점)]

- ①<u>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내지 21학점을 신청</u>할 수 있다. 단, 4학년은 15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.
-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4.00 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, 성적경고자는 12학점(예비성적경고자는 15학점)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## [학칙 제10장 시험·성적 제45조(재이수)

- ①모든 교과목은 취득 성적이 C+ ~ F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으며(단, 졸업인증제 교과목은 제외함), 학기당 재이수는 3과목 이하로 제한한다.
- ②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A-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. 다만, 재이수 성적이 과락(F일 경우는 기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.

## [장학금지급규정 제8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 제3항]

- 3. 직전학기 신청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
  - 가. 1학기 내지 6학기: 15학점 미만, 다만, 성적경고(예비성적경고)자의 신청학점 제한자는 12학점 미만

나. 7학기: 9학점 미만

2018.3.16